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5. 19 선고 2021가단80141(본소), 2022가단83338(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유류분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복

피고(반소원고) 1. B

2. C

6. D

7. E

피 고 3. F

4. G

5. H

변 론 종 결 2023. 4. 21.

판 결 선 고 2023. 5. 19.

주 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1느단500 유언증서검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2. 21. 검인한 유언자 I(J생)의 2019. 9. 5.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2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8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에게 위 부동산 중 각 14/182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망 I(이하 망인)은 2021. 4.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B,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피고들이 있었다.

원고는 2021. 6. 30.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망인 명의의 2019. 5. 9.자 유언증서(별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의 검인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유언증서는 A4용지 1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수기로 작성되었다. 이 사건 유언증서에는 유언내용과 작성연월일, 망인의 성명,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의 성명 옆에는 망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무인이 찍혀있다.

원고와 피고 D은 2022. 2. 21.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실시된 이 사건 유언증서에 관한 검인기일에 출석하였다. 위 검인기일에 작성된 유언검인조서에는 피고 D이 ‘망인이 치매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사건 유언증서 작성글씨는 망인의

글씨체가 아니고 내용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판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1066조 제1항).

이 사건 유언증서에 수기로 유언 전문, 연월일, 망인의 주소 및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K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증서의 필적은 망인의 필적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다.

한편,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12호)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유언증서가 자필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조서등본을 첨부하되,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언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들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 소나 수증자지위 확인 소의 승소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검인기일에 출석한 피고 A가 위 유언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들도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교부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유언의 유효함을 확인할 이익도 있다.

2. 반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소가 2021. 7. 22. 제기된 뒤 2022.

4. 18. 이 사건 유언증서의 필적 감정신청 및 2022. 7. 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이 이뤄져 본소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이는 상태(즉 필적 감정결과만 오면 되는 상태)에서 피고 B, C, D, E은 2022. 8. 25.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유증 받았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피고들이 사전증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위 반소청구를 다투었는데, 이후 위 피고들은 주장·입증을 하지도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은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반소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사전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 등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여 이를 심리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 결국 이 사건 반소는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최보원

부동산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광명시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15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372.893㎡

2층 529.269㎡

3층 529.269㎡

4층 529.269㎡

5층 529.269㎡

6층 529.269㎡

7층 529.269㎡

8층 529.269㎡

9층 529.269㎡

10층 529.269㎡

11층 529.269㎡

12층 529.269㎡

13층 529.269㎡

14층 221.553㎡

15층 221.5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4.8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광명시 대 45516.2㎡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45516.2분의 68.74

- 이상 -

2019. 9. 5.
 나 [] 은 광명시 []
 [] 아파트
 [] 동 [] 호 2차 - 내 이-52
 [] 에게 해 지
 정복 상공 한다

2019. 9. 5.
 [] []
 [] 광명시 []
 []
 [] [] []
 [] [] []
 [] [] []
 [] [] []

